

# 3.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규정

제정일: 2009. 9. 10

**제1조(목적)**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의 출판과 연구 성과를 높이 드러내는 학술도서를 간행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.

**제2조(사업)** 출판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신학 및 교양교재 출판 및 그 판매
- ②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및 그 판매
- ③ 학교간행물의 출판 및 그 보급
- ④ 부속 및 부설기관 간행물의 출판대행 및 그 판매
- ⑤ 위탁 및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

**제3조(위원회)** ① 출판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출판위원회를 둔다.

- ② 출판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위원은 7명을 넘지 못한다.
- ③ 출판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④ 출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- 1. 출판부 운영의 기본 방침
  - 2. 출판부 예산 및 결산 심의
  - 3. 출판도서의 선정 및 기획
  - 4. 출판부 부대사업의 심의

**제4조(직제)** 출판부의 직제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.

**제5조(출판 및 심사규정)**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의 간행물은 출판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출판부장)** 출판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출판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**제7조(부장직무)** 출판부장은 출판부의 직원을 통솔하며,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- ① 출판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
- ② 출판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- ③ 출판물의 편집 간행 및 출판 대행에 따르는 업무
- ④ 출판도서의 보관 및 판매에 따르는 업무
- ⑤ 예산 및 결산의 작성
- ⑥ 수입지출에 따르는 경리에 관한 사무
- ⑦ 기타 출판사업에 부대되는 사무

**제8조(운영자금)** 출판부의 기금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의 출판부 운영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
등으로 총당한다.

**제9조(급료)** 출판부는 직원 또는 용원을 채용하되, 출판부의 예산으로 그 급료를 지급한다.

**제10조(회계)** ① 출판부의 회계 연도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② 출판부의 예산은 출판부장이 작성하여 2월 안으로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
③ 출판부의 결산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무처의 결산방식에 따라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

**제11조(장부)** 출판부에는 출판물 대장, 경리장부, 재고 판매장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한 자 및 출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발행 및 인쇄)** 본 출판부의 발행인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저작권 및 판권은 출판부로 귀속한다.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13조(인세지급)** 본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한 인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① 저 서

가. 초 판

1000부 미만 : 정가의 12%

1000부 이상 : 정가의 15%

나. 중 판

1000부 미만 : 정가의 15%

1000부 이상 : 정가의 17%

② 편 저

가. 편 저 자 : 정가의 6%

나. 원고기고자 : 초판 시 일정금액의 원고료를 1회 지불하며 재판부터는 원고료 및 인세지불이 없다.

③ 번역서

가. 번역자 : 정가의 10%

나. 저작권자 : 출판권 계약 시 협의에 따라 실행한다. 본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4조(인세지급방법)** 인세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한다. 현물인 경우에는 정가의 80%를 단가로 하여 계산한다. 또 출판에 앞서 저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인세에서 공제한다.

**제15조(시행세칙)** 본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(출판연구비)** 출판부는 저자에게 출판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출판계약서)** 출판부와 저자는 적정한 출판계약서를 작성한다.

## 보 칙

**제18조(규정개정)** 본 규정의 개정은 출판부장의 제청으로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9조(시행)** 본 규정은 출판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